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5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이춘석・안호영・윤종군

윤준병・김윤덕・조 국

정준호 · 안태준 · 이원택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 외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고, 주거복지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별도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절차,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업무표준을 제정·시행 하여야 한다.
- ⑤ 주거복지센터의 조직·인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센터를 <u>둘 수 있다</u> .	<u>두어야 한다</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		
	<u>달체계의 운영</u>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		
	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 <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절차,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업무표준		
	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u>.</u>		
<u><신 설></u>	⑤ 주거복지센터의 조직・인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		
	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